

예산총칙

201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5,868,225	7,376,047
일반회계	237,477,975	7,124,339
특별회계	8,390,250	251,708
기타특별회계	8,390,250	251,708
상수도특별회계	3,251,280	97,538
항공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52,687	1,58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75,403	26,26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840,320	25,21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90,000	14,700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08,829	3,265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30,000	12,9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448,909	43,467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889,938	26,698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	60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884	2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1,18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승인 얻은 것으로 본다.